

심의결과 원안대로가결

의안번호	회의차수	회의일자	제 의 자
제 70 호	제 21 차	1989. 10. 19	총재 김 건

의안 "양도성예금증서 발행업무와 관련된 수신이율 및 부대조건" 개정

의결사항 "양도성예금증서 발행업무와 관련된 수신이율 및 부대조건"을 물임과
같이 개정한다.

제의관계 한국은행법 제7조
법규조항

제의취지 은행금융기관이 통업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양도성예금증서의
최단만기를 단축함으로써 동 증서가 은행권내의 자금조정 수단으로
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본건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

36/44

<참고사항> 제의관계 법규조항 발췌

한국은행법 제7조

① (생 략)

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, 운영,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.

③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, 지시를 발할 수 있다.

④ - ⑤ (생 략)

양도성예금증서 발행업무와 관련된 수신이율 및 부대조건 개정(안)

현 형	개 정 (안)	비 고
1. (생 략) 2. 만 기 : 91일이상 180일 이내 (중도해지 불가능) (신 설) 3. ~ 6. (생 략) 7. 기 타 : <u>자형발행 양도성예금증서의 만기전매인 및 담보취득은 금지</u> 8. <u>시시일자 : 1988. 12. 5</u>	1. (현 형 과 같 음) 2. 만 기 : 91일이상 180일 이내 (중도해지 불가능) <u>다만,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180일 이내로 함</u> 3. ~ 6. (현 형 과 같 음) 7. 기 타 : <u>자형발행 양도성예금증서의 만기전매인 및 담보취득과 91일미만 만기 양도성예금증서의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양도는 불가</u> 8. <u>시시일자 : 1989. 10. 19</u>	- 등업자를 대상으로 CD를 발행하는 경우 최단만기를 91일에서 30일로 단축 - 등업자를 대상으로 발행된 91일 미만 만기 CD의 등업자 이외의 자에 대한 양도 금지